

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년 6월 22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1년 5월 26일
- 나. 제안자: 김현희 의원 외 7명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6월 2일
- 라. 상정일자: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 6. 15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현희 의원)

제안이유

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,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용어 정의에 “마을미디어”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2조)
- 나.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
다. 입법예고(2021.5.27.~2021.6.1.) 결과: 의견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가. 개정 취지

- 마을공동체 활동 범주에 “미디어” 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

나. 주요 내용

- 용어의 정의 신설(안 제2조)
 - “마을미디어” 의 정의를 규정함
- 지원근거 마련(안 제9조)
 -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“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” 신설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을 미디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,

-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

- “마을미디어”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, 음성, 인쇄매체로, “마을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전달매체라고 규정하고 함.

- 안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에

-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이번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및 보편화에 따라 주민들이 일상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직접 제작·보급하여 온라인 공간 등에서 보다 더 활성화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주민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마을신문, 라디오 등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을 통해 마을 내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주민들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